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59
----------	-----

2024. 4. 25.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4. 12. 강남구청장(자원순환과)

나. 상정의결

- 제31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4. 4. 25.)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노사 단체협약 및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사용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임.

3. 주요내용

가. 본문 중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본 개정안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책명을 환경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바, 그 연혁을 보면 2016년 서울시의 노사 단체 협약에 기인하고 있음.
- 같은 협약에 따라 청소노동자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업무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 집행부는 ‘환경공무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9
----------	-----

제출연월일: 2024. 4. 12.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자원순환과

1. 제안이유

노·사 단체협약 및 서울시의 환경미화원 대외직명 사용 협조 요청에 따른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중 ‘환경미화원’에서 ‘환경공무원’으로 명칭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 가족정책과, 감사담당관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24. 3. 8. ~ 2024. 3. 28.) 결과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외하는”을 “심외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후단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대학교포함)”을 “(대학교 포함)”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원”으로, “동일자녀”를 “동일 자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를 “환경공무원 한 명당 대여가 가능한 대상 자녀”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2년거치”를 “2년 거치”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동일 기관 소속 환경공무원 한 명 또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 한 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u>환경미화원</u>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u>환경미화원</u> <u>자녀학자금</u> <u>대여기금</u>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구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 “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u>환경미화원</u> 자녀학자금 <u>대여기금</u> <u>운용심의회</u>(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공무원</u> <u>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u></p> <p>제1조(목적) ----- ----- <u>환경공무원</u> ----- ----- <u>환경공무원</u> ----- ----- ----- -.</p> <p>제2조(기금구성) ① ----- <u>환경공무원</u>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 ----- ----- ----- <u>환경공무원</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1. · 2. (생략)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② ~ ⑧ (생략)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생략)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5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포함) 및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생략)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 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3. ~ 5.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
----- 심의에 부치는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고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대여 대상) -----
----- 환경공무원-----
----- (대학교 포함)-----
-----.

제6조(대여제한 대상) -----

-----.

1. (현행과 같음)

2. ----- 환경공무원-----
동일 자녀-----

3. ~ 5.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략)

②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명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② (생략)

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공무원 한 명당 대여가 가능한 대상 자녀-----

-----.

제9조(이자 및 상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년 거치 -----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 총액(신청금 포함)이 환경공무원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공무원 한 명 또는 근속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 한 명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인한 규칙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자원순환과 행정9급 김경욱(02-3423-5977)